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82
----------	-----

2023년 4월 2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3월 27일, 박춘선 의원 외 29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4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박춘선 의원]

가. 제안이유

-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수목보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고,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여 옥상녹화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협약기간을 5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2)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 3) '유지·관리 실태 조사'를 '시설점검'으로 명시하고,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
- 4) 옥상녹화 식재기준의 녹지율을 완화함(안 별표 2).
- 5)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 및 옥상녹화 관리대장 기록·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 대상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여 옥상녹화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녹지 확충을 위해 건축물 및 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¹⁾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제10조는 옥상녹화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 연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옥상녹화 조성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에 따른 정비, 수목보식 등이 필요하고 옥상녹화 조성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따라서 안 제10조제3항에서 협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 협약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옥상녹화의 지속성 확보 및 관리책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1)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옥상녹화"란 건축물·가로구조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식재하여 생태적, 경관적 효용을 얻기 위해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최초 협약기간 이내에도 집중 호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시설정비나 수목보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약기간 중 협의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하자보수 기간(2년) 및 계약 만료일에 임박하여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동 조례 제12조에는 ‘시설점검’을 규정하고 있는데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으로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지·관리실태’와 ‘시설점검’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에서 유지·관리실태 조사²⁾를 ‘시설점검’으로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협약기한을 연장하여 5년이 지난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상지에 대한 시설점검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현행 조례대로라면 5년 이후에는 조사나 점검이 없으므로 옥상녹화 사업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안 별표2(옥상녹화 식재기준) 제3호는 옥상녹화 조성 시 녹지율은 ‘80% 이상’이나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 현행 녹지 비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동로와 휴게시설 등의 공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한 것으로 관리책임자의 옥상녹화 녹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민간의 옥상녹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제4항³⁾ 및 안 제12조제2항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2) 푸른도시여가국은 최근 5년 준공시설에 한해 도시녹화사업지(옥상녹화 57개소 포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 2022년 도시녹화사업지 모니터링 결과보고,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4591(2022.12.8.)

각각 삭제하고 동 조례 제14조(시행규칙)⁵⁾로 대신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음. 다만, 그동안 규칙으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와 ‘옥상녹화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법’을 만들도록 하였으나,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조례로 정한 내용을 지키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3) 제6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자치구 소유 건축물
2. 공공기관 건축물
3.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건축물
4. 가로구조물

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시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옥상녹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재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4) 제12조(시설 점검) ①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옥상녹화 최초 협약기간 이내에도 외부 요인에 따라 시설정비나 수목보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약기간 내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82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옥상녹화 협약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옥상녹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골자

- 협약기간 5년 단위 연장 규정 및 단서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협력 부분 수정(안 제10조제4항)
- “협약기간을 연장한”을 “협약기간 내”로 수정(안 제11조제4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5년에 한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 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5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4항 중 “협약기간을 연장한”을 “협약기간 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옥상녹화 협약서 체결) ①·② (생략)</p> <p>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옥상녹화 협약서 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③ ----- ----- 하되 5년에 한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 ----- -----.</p>	<p>제10조(옥상녹화 협약서 체결)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u>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5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p> <p>④ <u>관리책임자</u>----- ----- ----- -----.</p>
<p>제11조(옥상녹화의 유지·관리) ① ~ ③ (생략)</p> <p><신 설></p>	<p>제11조(옥상녹화의 유지·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u>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수목보식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11조(옥상녹화의 유지·관리)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 ----- <u>협약기간 내</u> ----- ----- ----- -----.</p>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을 “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약서의 내용은”을 “협약서는”으로, “정하여 체결한다”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 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5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약기간 내 옥상녹화 조성 지역에 대해서는 수목보식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의 제목 “(시설 점검)”을 “(시설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 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

안 별표 2 제3호 중 “80%”를 “60%”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옥상녹화 등에 <u>소요되는</u>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드는</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 ③ (생 략)</p> <p>④ <u>제3항의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u>는 <u>규칙으로 정한다.</u></p>	<p>제6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자</u>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생 략)</p> <p>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옥상녹화 분야에 <u>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u> 사람</p>	<p>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사람</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u> ----- -----</p>
<p>제10조(옥상녹화 협약서 체결) ① (생 략)</p>	<p>제10조(옥상녹화 협약서 체결) ① (현행과 같음)</p>

②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한다.

1. ~ 9. (생략)

<신설>

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옥상녹화의 유지·관리) ① ~ ③ (생략)

<신설>

제12조(시설 점검) ①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

② 협약서는 -----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③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5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장 당시 옥상녹화 조성지역의 상태에 따라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

제11조(옥상녹화의 유지·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약기간 내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수목보식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

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록화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